

수원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23000(본소), 2020나23017(반소) 판결

[공사대금 · 지체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23000(본소), 2020나23017(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합11596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김찬영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훈

변론 종결 2021. 6. 17.

판결 선고 2021. 7. 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합11596(본소), 2020가합21896(반소)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3,636,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1.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88,103,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이 사건 항소장 송달일(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71,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8. 5. 8.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D 대 231.4m² 지상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사계약서

제2조 [공사내역]

(3) 공사기간: 착공 2018. 5. 21. ~ 완료 2018. 12. 31.

제5조 [공사 계약금액과 기성금 지급]

1. 본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별첨 견적서에 표기된 공사금액의 가감으로 일금 칠억사천만 원정(₩740,000,000/부가세별도)으로 한다.

2. 피고들은 이건 신축공사의 본 기성금을 원고에게 다음 표와 같은 공정별로 지급한다.

1	선수금(계약시 총공사비의 30%)	222,000,000원	0%	0%
2	골조공사 완료 후	207,200,000원	40%	40%
3	외장공사 완료 후	103,600,000원	20%	60%
4	수장공사 완료 후	155,400,000원	30%	90%
5	잔금(준공 후)	51,800,000원	10%	100%

제6조 [부대공사와 대금지급]

1. 피고들이 계약 건축공사 견적서 외 별도의 공사를 요청할 경우, 피고들이 추천하는 재료나 업자 등을 적극 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이 추천하는 재료나 업자가 공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들은 원고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피고들은 별도의 공사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사전 상호 협의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제7조 [대금의 타용도로의 사용 금지]

피고들이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원고는 이를 계약 건축공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대금 지급의 보류와 지체에 대한 보상금]

2. 원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1/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피고들의 계약 해제 등]

1. 피고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2) 원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3) 기타 원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 [특약사항]

1.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들과 원고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특약사항

1. 원고는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피고들에게 요청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 나. 피고들은 2018. 5. 14.부터 2018. 12. 1.경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보관하는 피고 B과 F(피고 B의 모) 명의의 은행계좌로 기성금을 송금하여 출금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합계 455,201,722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 다. 피고들은 2019. 1. 7. 원고에게 '원고가 위 공사대금 중 100,880,000원을 이 사건 공사 외 목적으로 유용하여 이 사건 계약 제7조를 위반하였다. 계약서상 완공 기일인 12. 31.이 지났고, 12.

16.경부터 1. 7.까지 공정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후에도 공정이 진행될 여지가 없으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다(계약서 21조 2항에 명시)'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의 송달로써 원고에게, 공사대금 유용 등 원고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들 주장의 약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의사표시는 민법 제673조에 의한 도급인의 완성 전 해제권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들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0,520,078원 및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익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17,583,3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공사대금 중 1억여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 제7조를 위반하였고, ② 2018. 12. 16.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위 각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고2),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는 약정준공기한 다음날인 2019. 1.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2019. 1. 7.을 기준으로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봄이 상당한 약 90일 후인 2019. 4. 6.까지 96일 간 지체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체상금 71,040,000원(= 공사대금 740,000,000원 × 약정 지체상금률 1/1000 × 96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는 본소 및 반소청구 모두에 공통된 쟁점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1)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여부 가) 원고의 공사대금 유용 여부

살피건대, 을 제2,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중 1억여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 중단 여부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단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에는 기성금과 관련하여, 'i) 계약 체결시 선수금 2억 2,000만 원, ii) 골조공사 완료 후 기성률 40% 207,200,000원, iii) 외장공사 완료 후 기성률 60% 103,600,000원, iv) 수장공사 완료 후 기성률 90% 155,400,000원, v) 준공 후 잔금 51,800,000원' 등 공정별 기성률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공사 중단 무렵인 2018. 12.경까지 공사대금의 약 61%3)에 해당하는 455,201,722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당시의 기성고가 76.87%임은 제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8. 12. 16.경 교부한 공사대금 사용내역서(을 제2호증)의 기재내역,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목수출근표, 작업일보, 현장식대정산서 등의 기재(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해지 통보 무렵인 2018.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골조공사를 완료한 이외에 창호공사, 외장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목공사, 기타 엘리베이터 공사 일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내역 중 외장공사는 모서리 4개소 일부 미시공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

③ 피고들은 공사기간 동안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의 사용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따른 처리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지급은 원고가 구체적인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들에게 고지하여 이를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들은 2018. 12. 1. 이후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유용 등을 이유로(원고의 공사대금 유용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무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공사의 지연과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무렵 미시공된 공사 내역(제1심 감정인 E의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은 외장공사 중 일부, 내장공사 등에 불과하다), 앞서 본 기성률의 범위, 이 사건 공사의 약정 공사기간(2018. 5. 2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2018. 12. 1.부터 약정된 공사기간 완료일인 2018. 12. 31.까지의 기간이 약정 공사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민법 제673조에 규정된 도급인의 임의해제 여부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해제는 도급인의 필요나 편의에 따라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해제를 하는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 그러나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를 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므로,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도급인이 내세운 해제사유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바로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로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는 해제를 주장하는 도급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부과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의 송달에 의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원고의 공사대금 유용으로 인한 피해의 환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의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원고의 약정위반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위와 같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고라도 이 사건 계약의 구속에서 무조건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해제의

의사표시를 민법 제673조에 의한 임의해제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제 여부 한편, 피고들은 2019. 1. 7. 원고에게 원고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고 다른 공사업자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역시 피고측의 해제통고를 수용하면서 2019. 1. 29. 이 사건 소로써 기성대금지급과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9. 1. 7.경 피고들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원고의 해제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31.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성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 총공사비에서 곧바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든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든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해제된 경우의 공사대금 정산 방법 및 기성고 산정 비율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계약 등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위 각 증거, 제1심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제1심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률은 76.87%로 봄이 상당하다.

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각 공종별 완성 여부 및 범위 등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견적서 및 현장사진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률을 76.87%로 산정하였고, 감정인의 위 감정과 관련하여 그 감정방법의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피고들은, 감정인이 객관적인 자료 없이 원고가 특정하여 제출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기성률을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이 원고가 특정한 설계도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내용,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견적서 및 현장사진 등을 참고하여 감정결과를 도출한 점, 그 감정과정에서 원고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 특정 도면과 감정 중단 시점 사진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원고 주장과 달리 미시공으로 반영하는 등 나름대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의 해제 이후 피고들이 스스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어 기성고 확정을 위한 사실관계 파악에는 불가피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감정인은 관련 자료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해제 당시 기성률에 따른 공사대금은 568,838,000원(= 이 사건 계약상의 공사대금 740,000,000원 × 기성고 76.87%)이 되고,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455,201,722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잔여공사대금은 113,636,278원(= 568,838,000원 - 455,201,722원)이 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56,883,800원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부가세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피고들에게 요청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각 증거, 갑 제22, 26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으로도 피고 B이 건축주, 피고 C이 시공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들은 'G'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재료나 용역을 공급한 업체들에 대하여는 'G'을 공급받는 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피고들이 공사대금과 별도로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의 '부가세별도'의 기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사시행과정에서 원고가 제3자로부터 재료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할 사정이 생긴 경우 피고들에게 요청하여 피고들이 직접 공급업체에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기재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행이익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673조에 의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계약이 피고들의 이행거절에 따라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률에 따른 잔여공사대금 113,636,2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날의 다음날인 2019. 6.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의 약정준공기한이 2018. 12. 31.인 사실, 원고가 위 시점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가. 1) 나)항에서 인정한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사의 지연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형식

판사이연경

판사정진화

- 1) 원고 제출의 항소장에 의하면,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본다.
- 2)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1항 (2) 내지 (3)에 해당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 3) 기지급금 455,201,722원/공사대금 74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100